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1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윤후덕
이연희 · 임미애 · 서왕진
박해철 · 김남희 · 박 정
허성무 · 이수진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기초자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통계자료”를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로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

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u>1. 국회의원</u> <u>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 국회도서관장 · 국회예산정책처장 ·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u>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⑩ 제7항 및 제9항----- ----- --제외한다) 및 기초자료----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 ⑪ -----제10항-----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 ----- ----- -----.
---	--